

법정대리권소멸통지신고서

사 건 20ㅇㅇ가단ㅇㅇㅇ 손해배상(기)

원 고 000

피 고 ◇◇◇

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○○년 ○월 ○일 성년에 도달하여 원고의 법정대리 인 친권자 부 ◐◐◐의 대리권이 소멸하여 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기에 이 를 신고합니다.

첨 부 서 류

1. 법정대리권 소멸통지서 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제○민사단독 귀중



법정대리권소멸통지서

발송인 ㅇㅇㅇ

(주소)

수취인 ◇◇◇

(주소)

○○지방법원 20○○가단○○○ 손해배상(기)청구 사건에 관하여 발송인(원고)는 20○○년 ○월 ○일 성년에 도달하여 발송인(원고)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●●●의 대리권이 소멸하였기에 통지합니다.

2000. 0. 0.

위 발송인(원고)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제○민사단독 귀중

제출법원	소송이 제기된 법원(수소법원)			
제출부수	신고서 1부	관련법규	민사소송법 제63조	
비용	·인지액 : 인지는 붙이지 않음			
기 타	• 법정대리권소멸통지를 한 취지는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(민사소송규칙 제13조 제1항), 소송외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고서 이를 첨부한 신고서를 수소법원에 제출 • 소송내에서 법정대리권소멸통지신청을 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통지와 법원에 대한 신고를 동시에 하여도 됨	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당사자 >> 소송대리